상품구매계약서 [회사]

ㅁ판매원 ㅁ소비자 ※ 매 주문시 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판매원번호** |  |
| **생년월일** |  | **소속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방법**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수령인** |  |
| **배송주소** |  | | | | |

※ 상품구매 후 원칙적으로 즉시 출고를 하오니 정확한 상품명과 구매금액을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불량으로 인한 동일 상품으로의 교환 및 반품규정에 의한 반품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주문내역** | **상품번호** | **상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PV**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고일자** |  | | **합계** |  |  |  |
| **출고담당** | (인) | | **수령인** | (인) | | |

※ 미트리(주)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공제번호통지서 발급 확인은 회사 홈페이지 및 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제** | **현금** | 원 | **입금일** | 원 일 | **임금은행** |  | **입금자** |  |
| **카드명** | | **카드번호** | | **유효기간** | | **승인번호** | |
|  |  |  |  |  |  |  |  |
| **승인일** |  | **금액** |  | **소유자** |  | **할부** |  |

※ 미트리(주)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에 기재된 정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공제번호통지서 발급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계약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약관은 뒷면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계약일자 :**  년 월 일 | **신청인** (인/서명) |

****

미 트 리 (주) 대표이사 이 옥 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252, 7층| 대표전화 : 1670-6135 | 팩스 : 051-980-0910 |

이메일 : metree2019@nate.com  | 홈페이지 : METREE.KR

상품구매계약서 [판매원]

ㅁ판매원 ㅁ소비자 ※ 매 주문시 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판매원번호** |  |
| **생년월일** |  | **소속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방법**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수령인** |  |
| **배송주소** |  | | | | |

※ 상품구매 후 원칙적으로 즉시 출고를 하오니 정확한 상품명과 구매금액을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불량으로 인한 동일 상품으로의 교환 및 반품규정에 의한 반품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품주문내역** | **상품번호** | **상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PV**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고일자** |  | | **합계** |  |  |  |
| **출고담당** | (인) | | **수령인** | (인) | | |

※ 미트리(주)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공제번호통지서 발급 확인은 회사 홈페이지 및 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제** | | **현금** | 원 | **입금일** | 원 일 | **임금은행** |  | **입금자** |  |
| **카드명** | | **카드번호** | | **유효기간** | | **승인번호** | |
|  |  |  |  |  |  |  |  |
| **승인일** | |  | **금액** |  | **소유자** |  | **할부** |  |

※ 미트리(주)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에 기재된 정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공제번호통지서 발급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계약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약관은 뒷면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계약일자 :**  년 월 일 | **신청인** (인/서명) |

****

미 트 리 (주) 대표이사 이 옥 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252, 7층| 대표전화 : 1670-6135 | 팩스 : 051-980-0910 |

이메일 : metree2019@nate.com  | 홈페이지 : METREE.KR

|  |  |
| --- | --- |
| \* 상품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판매원은 주문과 동시에 상품대금 전액을 현금,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미트리(주)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배달수령: 상품대금의 입금확인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통상 5일 이내에 주문 시 신청된  주소로 배달됩니다.  \*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1. 미트리(주)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 성분, 함량, 유통기한, 용법, 용량 기타 품질 표시  내용을 보증합니다.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법, 용량, 보관, 취급 상용상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판매원은 소비자보호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회사가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관한  기준고시(공정 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  서가 발급된 구매계약 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비자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미트리(주)의 상품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는 동  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트리(주)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상품 및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트리(주) 소비자상담실 : 1670-6135 / 한국소비자원 : 02-3460-3000  \* 공지사항  1. 상품 주문시 상품대금 외에 일체의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다.  2. 카드매출의 청약철회는 7일 경과 후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시 회사가 교부한 판매원등록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청약철회신청서, 신분증,  카드전표, 본인이 수령한 상품을 갖추어 신청하십시오.  \* 청약철회 등  1. [소비자의 경우]  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을 경우 또는 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5) 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 소비자는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미트리(주)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원의 경우]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3.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청약철회, 계약해제 통보서  첨부  \*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소비자의 경우] | 가.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판매원은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나.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원이 부담하며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8항)  다. 미트리(주)는 소비자의 반품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차액을 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 제6항)  2. [판매원의 경우]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미트리(주)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  일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월경과 2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5%, 인도일로부터 2월경과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7%의 비용을 공제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6조)  \* 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한다.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판매원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  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교환  교환이라 함은 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 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구매계약서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5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2.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  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3.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5.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6.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  7. 누구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 하여  서는 안 된다.  8.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www.kossa.or.kr) 및 02-2058-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반품은 판매원 본인이 직접 방문처리 하셔야 하며 대리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외규정은 회사 규정에 따름)  ※ 본 신청서는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였으며, 그 밖의 계약조건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과 미트리(주)의 규정에 따른다. |

**반품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 **연락처** | |  |  | **반품이유** : |
| **전화번호** | |  | **소속센터** | |  |  |
| **반품일자** | **매출일자** | **반품내역** | **수량** | **금액** | **결제방법** | **비고**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반품을 신청합니다.

미트리(주)에 등록된 회원님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예금주** |  | **은행** |  |
| **환불계좌번호** | |  | |

**※대금공제사항**

상품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 대금의 0%공제 (왕복택배비본인부담)

상품인도일로부터 1개월경과 2개월이내에 반품을 하는 경우 대금의 5%공제

상품인도일로부터 2개월경과 3개월이내에 반품을 하는 경우 대금의 7%공제

**※판매원이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상품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